

## [2021학년도 1학기 체류기간연장/자격변경/외국인등록증 단체 접수제 안내]

부산출입국.외국인청의 민원혼잡 시기에는 유학생의 출입국.외국인청 종합민원센터 개별 방문예약이 불가함.

출입국 홈페이지(<https://www.hikorea.go.kr>) 전자민원 혹은 유학생지원센터 단체접수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음.

- 민원혼잡 시기 : 2021년 2월 1일(월) ~ 3월 31일(수)

※ D-4 외 기타 비자에서 체류자격변경을 하는 경우 출입국 홈페이지에서 방문예약 후 부산출입국.외국인청 종합민원센터에서 체류자격 변경해야 합니다. 특히 교환학생 중 무비자로 입국한 학생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.

### <체류기간 연장, 체류자격 변경, 외국인 등록증 신청 단체접수 서비스 안내>

1. 단체접수 서비스 : 유학생지원센터에서 비자관련 신청서류를 취합한 후 대리로 출입국.외국인청에 제출  
※ 단체접수와 개별접수의 제출서류는 동일함(단체접수로 제출서류 간소화 아님!!)

2. 대상 : D-2 비자 체류기간 연장, 체류자격 변경 (D4 → D2), 외국인 등록증 발급

3. 서류접수 기간 (접수 시간대 엄수)

1) 체류기간 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 : 1차) 2021. 1. 25.(월) ~ 26.(화) 9:30 - 11:00, 14:00 - 15:30

2차) 2021. 2. 22.(월) ~ 23.(화) 9:30 - 11:00, 14:00 - 15:30

2) 외국인등록 : 1차) 2021. 3. 2.(화) ~ 3.(수) 9:30 - 11:00, 14:00 - 15:30

2차) 2021. 3. 5.(금) 9:30 - 11:00, 14:00 - 15:30

3) 체류기간 연장 : 2021. 3. 25.(목) 9:30 - 11:00, 14:00 - 15:30, 3. 26.(금) 9:30 - 11:00

※ 서류접수 후 2~3일 이내 출입국.외국인청에 제출하므로, 체류기간만료일 확인할 것

※ 접수처는 서류를 작성할 공간이 부족하므로 미리 신청서 작성 및 사진 부착 후 방문해야 함

4. 제출장소: 본관 입구 오른쪽 외부(본관 건물 내부 아님), **방문 시 마스크 착용할 것**

5. 제출서류

#### 1) 체류기간 연장: (재학생 기준)

①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사본(본인 사진 있는 페이지 전체 A4 사이즈 세로로 복사)

② 수수료 6만원(현금, 만원권 이상) - 정부초청장학생은 장학증서 제출 시 면제

③ 신청서(첨부파일 참고, 사진 부착하지 않음)

④ 성적 증명서 및 재학 증명서

⑤ 체류지 입증서류

⑥ 재정능력입증서류(은행 잔고증명서 - 1년 체류: USD 9,000 이상, 6개월 체류: USD 4,500 이상, 직전학기 성적이 2.0 이상인 경우 면제)

⑦ 결핵진단서(해당자에 한함)

※ 학사(D-2-2) → 석사(D-2-3) 혹은 석사(D-2-3) → 박사(D-2-4) 로 연장하는 학생은 **표준입학허가서, 최종학위증명서, 재정능력입증서류를 필수 추가 제출**하고 성적증명서는 이전 학위과정 성적증명서 제출

## [추가 제출서류]

### ※ 수료 후 연구생(논문만 남은 상황, 수료후 연구생 등록 필수!)

: 재정능력입증서류, 논문지도 일정에 대한 지도교수 확인서, 수료증명서

- 재정능력입증서류는 6개월 혹은 1년 연장하고자 하는 만큼의 재정능력 증명 필요.

(단, 장학금 증명서 제출 시 참여 연구 과제가 본인 논문과 연관 있다는 지도교수의 확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)

- 논문 지도교수 확인서는 논문지도 일정을 교수님께서 기재하고, 서식 하단에 있는 유학 담당자는 유학생지원센터(본관 1층) 비자업무 담당자이므로 비워두고, 서류 작성 후 방문해서 서명 받아야 함.(단체접수 신청 전까지 완료할 것)

- 수료증명서는 본관 1층 자동증명발급기 또는 학생지원시스템 인터넷 증명발급에서 출력

### ※ 학부생 수학연한(8학기) 초과 후 학점 취득하는 학생

: 재정능력입증서류, 수업연한 초과자 학점취득 일정에 대한 지도교수 확인서, 사유서(본인작성)

- 학점취득 일정에 대한 지도교수 확인서는 세부 일정을 교수님께서 기재하고, 서식 하단에 있는 유학 담당자는 유학생지원센터(본관 1층) 비자업무 담당자이므로 비워두고, 서류 작성 후 방문해서 서명 받아야 함.(단체접수 신청 전까지 완료할 것)

### ※ 대학원생 수학연한(4학기) 초과 후 학점 취득하는 학생

: 재정능력입증서류, 수업연한 초과자 학점취득 일정에 대한 지도교수 확인서

- 학점취득 일정에 대한 지도교수 확인서는 세부 일정을 교수님께서 기재하고, 서식 하단에 있는 유학 담당자는 유학생지원센터(본관 1층) 비자업무 담당자이므로 비워두고, 서류 작성 후 방문해서 서명 받아야 함.(단체접수 신청 전까지 완료할 것)

: 학점 취득 후 수료후연구생이 논문작성으로 또 연장해야하는 경우 학점 취득과 논문 작성은 각각 연장신청 함

※ 수료 후 최대 연장 가능 기간 : 학부 2년, 석사 3년, 박사 5년(최대 연장 가능 기간 초과 불가)

※ 입학 후 최대 연장 가능 기간 : 학부 6년, 석사 6년, 박사 8년(최대 연장 가능 기간 초과 불가)

## 2) 체류자격 변경 (D4 → D2) :

※ 입학일(3월 1일) 이전 자격변경이 원칙으로, 입학일 이후 변경 신청 시, 출입국.외국인청에서 벌금을 부과하니, 꼭 입학일 이전까지 변경하기 바랍니다. 현재 체류지 관할 또는 부산출입국.외국인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
① 외국인등록증

② 여권사본(본인 사진 있는 페이지 전체 A4 사이즈 세로로 복사) 및 사증발급확인서 사본

③ 수수료 13만원(현금, 만원권 이상)

※ 수수료는 외국인등록증 신규발급(D-2로 변경) 이 포함된 비용이므로 추가적으로 외국인등록증 신청 불필요

※ 정부초청 장학생은 장학증서 제출 시 비자 변경 수수료(10만원) 면제,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(3만원)만 납부

④ 신청서(첨부파일 참고)

⑤ 사진(35mm\*45mm, 배경 흰색,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것, 양쪽 귀가 보여야 함)

⑥ 표준입학허가서

⑦ 체류지 입증서류

⑧ 결핵진단서(해당자에 한함, D4 비자 신청 시 제출했을 경우 제출 안 함)

⑨ 한국어연수 출석 및 성적증명서

⑩ 최종학위증명서

⑪ 재정능력입증서류(잔고증명 - 부산대 내 상위과정 진학 : 1,000만원/타대에서 부산대 상위과정 진학 : 2,000만원)

### 3) 외국인등록증 신규 발급 :

- ① 여권사본(본인 사진 있는 페이지 전체 A4 사이즈 세로로 복사) 및 사증발급확인서 사본
- ② 신청서(첨부파일 참고)
- ③ 수수료 3만원(현금, 만원권 이상)
- ④ 재학증명서(연수학생의 경우 3월 2일(화) 오전 11시부터 국제교류본부 행정실에서 수령 가능)
- ⑤ 사진(35mm\*45mm, 배경 흰색,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것, 양쪽 귀가 보여야 함)
- ⑥ 체류지 입증서류

※**단체지문등록** : 일시 및 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국제교류본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예정  
단체접수제를 통해서 외국인등록을 신청한 경우 단체로 지문등록 실시

### 4) 재정능력입증서류

- 은행잔고증명서, 장학금 증명서 등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한 것을 원칙으로 함.
- a. 잔고증명서 상에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에 대해서는 유효기간까지 유효한 증명서로 인정  
(단, 발급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만 인정)  
- 국내에 있는 은행이 발급한 본인 잔고증명서만 인정(해외서류 불인정)
  - b. 장학금(수업료 및 체재비)을 받는 학생에 대해서는 장학금 증명서, 대사관 학비지원 확인서 등으로 대체

### 5) 최종학위증명서

- (학위증 공증) 법무부장관 고시 21개국 출신 국민 또는 중점관리 대상국가 소재 고등학교, 대학 등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는 아래 a, b, c 중 택일, **원본** 제출(중국의 경우 c만 가능)
- a. 아포스티유(Apostille) 확인을 받은 학위 등 입증서류
  - b. 출신학교가 속한 국가 주재 한국영사 또는 주한 공관 영사확인을 받은 학위 등 입증서류
  - c. 중국의 경우 : 중국교육부 운영 학력·학위인증센터 발행 학위 등 인증보고서(중국 내 학력·학위 취득자에 한함)
- ※ 단, 국내 대학 등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공적확인을 받지 않은 학위증 제출 허용

### 6) 체류지입증서류 안내 : 거주/숙소 제공 확인서 혹은 기타 증빙서류 제출

- a. 거주지 임대계약서 및 거주 / 숙소 제공 확인서 (첨부파일 참고) :
  - 거주지 임대계약서에 본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면 임대계약서 사본만 제출
  - 본인의 이름이 아니라 친구 혹은 가족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, '거주/숙소 제공 확인서' 추가 제출.  
친구 혹은 가족 등 계약서에 성명 기재된 사람이 거주/숙소를 제공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서명.
- b. 기타 제출가능 증빙서류 :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, 공공요금 납부영수증
- c. 부산대학교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,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홈페이지 ([https://dorm.pusan.ac.kr/applyls/00\\_login/login](https://dorm.pusan.ac.kr/applyls/00_login/login))에서 '원생확인서' 출력(1학기 - 3월 2일부터 출력 가능)  
※ 1학기 신규 입사자의 경우 기숙사가 아닌 현재 체류하고 있는 곳의 입증서류를 제출한 경우 기숙사 입사 후 14일 이내 체류지 변경 신고해야 함.

**7) 결핵진단서 안내 : 2016년 3월 2일 이후 결핵 고위험 국가 출신 학생이 최초로 체류기간 연장/ 체류자격 변경 혹은 등록 시 3개월 이내 발급된 결핵검진확인서 필수 제출**

※ 2016년 3월 2일 이후 이미 출입국 혹은 한국영사관에 결핵진단서를 제출한 사람은 제출 생략

※ 법무부 지정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만 제출 가능(법무부지정 의료기관 현황 및 확인서 양식 첨부파일 참고)

▶▶**결핵 고위험 국가** : 네팔, 동티모르, 러시아, 말레이시아, 몽골, 미얀마, 방글라데시, 베트남, 스리랑카, 우즈베키스탄, 인도, 인도네시아, 중국, 캄보디아, 키르기즈스탄, 태국, 파키스탄, 필리핀, 라오스, 나이지리아, 남아프리카공화국, 벨라루스, 모잠비크, 몰도바공화국, 아제르바이잔, 앙골라, 에티오피아, 우크라이나, 짐바브웨, 카자흐스탄, 콩고민주공화국, 케냐, 파푸아뉴기니, 타지키스탄, 페루

6. 소요기간: 약 3~4주

7. 결과 통보 및 외국인등록증 수령: 유학생지원센터에서 수령 (추후 이메일(visa@pusan.ac.kr)로 알림)

8. 유의사항

1) 개인적인 사정으로 단체접수제 신청이 힘들 경우, 개별적으로 출입국 웹사이트 (<https://www.hikorea.go.kr>) 에서 전자민원 또는 방문예약 후 개별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- 『하이코리아』전자민원 신청 안내

○ 『하이코리아』를 통한 전자민원 신청시 수수료 할인 혜택(법정 수수료 20% 감면) 및 신속한 업무처리 혜택 부여

※ 전자민원 신청 방법은 첨부파일 참고

○ 당일 기간 만료자 및 예약 미필자는 업무처리 불가

2) **체류기간 연장, 체류자격 변경, 외국등록을 신청한 경우, 외국인등록증이 발급 될 때까지 출국이 불가합니다.**  
주민센터에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발급 후 일출국 가능.

3) 체류지 변경신고

○ 주소 이전 시 14일 이내

- 신주소지 구청, 주민센터 또는 관할 출입국사무소 이전신고

- 14일 이후 신고 시 범칙금 부과